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 동 길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 (이하 “퇴소청소년”이라 한다)의 취업, 자립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퇴소청소년은 취업 등을 위한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 생활을 시작함에 따라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차원에서 퇴소청소년에게 공동체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교육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퇴소 청소년 등의 자립·자활을 위한 시책 및 지원 사업, 자립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안 제6조)과 퇴소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기간 연장, 지역협의체 구성,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안 제9조) 등입니다.

-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보호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퇴소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